

감원방지 의무기간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발생시 지원금 지급제한(부지급, 회수) 안내

아래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**감원방지 의무기간을 준수**하여야 하며, 만약 귀 사업장내 소속 근로자를 **고용조정에 의해 이직을 시킬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(부지급, 회수)**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『 □ 해당, 비해당 』란에 체크하세요.

① 지원금별 감원방지 의무기간

지원금 종류	감원방지 의무기간 (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금지)
고용안정 장려금	
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(대체인력지원)	-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 ※ 다만, 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

②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

대분류	중분류	세분류	고용조정 해당여부
회사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	23.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	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이직 -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 이직 -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이직 -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(명예)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·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·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- 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(아웃소싱 포함)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직 -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 이직 - 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	26.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	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
※ 『 해당, 비해당 』란에 체크하세요.

③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)

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원 제한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『 해당, 비해당 』란에 체크하세요.

④ 지원의 제한(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)

-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, 장려금 또는 인건비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함.

1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4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
상기 내용을 안내 받았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20

확인 사업장명: (직인)

* 참고: 통영고용센터 기업지원팀, 055-650-1814, 1818. Fax:0503-8803-0488

확 인 서

(출산육아기 고용안정-대체인력)

대체 근로자 확인사항

※ 문답이 “ < 있음 / 없음 > ”일 경우 동그라미 표기

○ 근로자 인적사항

1. 성 명 :
2. 주민번호 : / ♣연락처 :
3. 집주소 :

○ 근로조건 등(공통 확인사항)

1. 근로계약기간 : (20 . . ~ 20 . . .)
2. 취업경로(지인소개, 고용노동부 알선, 일간지 구인정보 등 세부적으로 기재) :
3. 담당업무 :
4. 월 임금 : 원 / ♣임금지급 여부(입사일 이후 현재까지) : <지급 / 미지급>

○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련성 여부 : <있음 / 없음>

*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인수합병 등

사업주 확인사항

- 원근로자 담당업무 :
- 원근로자 복직일 :
- 원근로자 복귀 후 계속 근무 여부 :
- 지원금 대상자 채용 전 3월, 채용 후 12월 이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발생 여부: < 있음 / 없음 >
⇒감원자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 :
- 최저임금 준수 여부 : 예 / 아니오
- 4대보험 가입여부 : 예 / 아니오
- 사업주와 근로자 간 관련성 여부 : <있음 / 없음>
*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인수합병 등
- 임금 지급일 : 매월 일 / ♣임금 계산기간 :
- 신청 사업장명 : / ♣ 대표자 :

<지원금 제도 관련 안내 >

■부정수급 :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 지원금 부지급하며,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2~5배 추가 징수는 물론 1년 이상 각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.

※ 유형 : 가공의 피보험자 등록, 입사일 허위 신고, 지원금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허위 작성·제출한 경우 등

■감원방지 : 지원금 대상자 채용 전 3월, 채용 후 12월 이내 고용조정(회사사정 퇴사)에 의한 이직 발생할 경우 지원된 지원금 전액 회수함.

■지원금 상호조정 및 지원제한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) : 해당 비해당

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며, 지원금 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받음.

20 년 월 일

사업장명 :

(직인)

